

전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0가단115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차종선, 진현덕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제갈우호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E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1, 2, 6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9. 5. 20.자 매매계약을,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9. 5. 20.자 매매계약을,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2, 3, 6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9. 5. 20.자 매매계약을, 피고 D 사이의 별지 목록 2 내지 9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9. 5. 20.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D은 E에게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임실통기소 2019. 7. 4. 접수 제597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93,520,86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100,853,45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93,056,36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57,024,00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9.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G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 3억 원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2016. 3. 9. G은행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G은행은 이 사건 회사에게 대출을 하였으나 위 대출의 원리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9. 11. 29. G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288,753,254원을 대위변제한 후 위 대위변제금과 대지금금 513,974원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및 E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전주지방법원 2019차전1126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3. 위 법원은 ‘이 사건 회사와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267,228원 및 그 중 288,753,254원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 27. 확정되었다.

다. E는 2017. 7.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H, I로부터 위 부동산을 5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후 이를 토지와 함께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 D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사람들을 모아 2017. 9. 25. 피고 회사들이 각 설립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 회사들은 2017. 9. 27.경 E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E의 2017. 7. 7.자 부동산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들이 E에게 계약금 6,000만 원과 중도금 2,000만 원 등을 이미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 4억 8,000만 원은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이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과 사이에 피고 회사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한 태양광발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금 등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주식회사 J의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용역 업무의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피고 회사들은 2019. 1. 30. 피고 회사들이 주식회사 J에게 2017년 11월 선금금과 2018년 1월 중도금으로 지불한 292,240,000원에 대하여 E가 연대보증을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식회사 J이 2019. 4. 30.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 회사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바. 이후 2019. 4. 30.까지 주식회사 J은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못하였고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E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1, 2,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 7. 4.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59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9. 7. 4.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59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2, 3,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9. 7. 4.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59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2 내지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9. 7. 4.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59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E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므로 피고들은 E가 이를 타에 처분하게 되면 원고의 채권의 확보가 막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이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들을 취소하고 피고 D은 E에게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른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 책임재산의 합계금 402,900,304원의 범위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을 위 부동산의 각 책임재산 비율로 안분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2017. 9. 27.경 체결된 E의 2017. 7. 7.자 부동산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토지로서 그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2019. 5. 20.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2017. 9. 27.경 이후부터 사실상 피고들의 소유로서 E가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의 사해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

별지